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26일, 엄태영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엄태영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 및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및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자녀 1명당 사용할 수 있는 휴직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 공직사회에서부터 일·가정 양립 문화를 선도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및 제72조제7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개정안은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

하되,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는 한편,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도 현행 3년 대비 1년 연장하여 4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공무원의 자녀돌봄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가정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 부문의 제도 개선이라는 국한된 범위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데에서 나아가 모범 고용주로서 정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의 확대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봄.

‘육아’의 정의를 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으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이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넓게 정의되어 있고,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라는 요건은 통상적인 관념상 돌봄이 필요한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녀의 요건으로서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함에 따라 그 실효성있는 활용을 위해 자녀 1명당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함께 연계하여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8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는 것은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와는 관계에서 일부 신중

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가족돌봄휴직 기간을 일부 확대하는 등 대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